중원대학교
JUNGWON UNIVERSITY

기초생활수급자 예비군훈련 제외 안내

본교 재학생 및 교직원 중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 대원은 예비군 훈련이 방침전면보류(면제) 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대원은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예비군 대대본부로 신고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※ 보류란 '예비군법'과 국방부 방침으로 예비군의 동원 및 훈련소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

- 아 래 -

1. **추진배경** : 공정한 사회구현의 일환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예비군 훈련 보류자로 적용하여 생계를 보장하기 위함

2. **기초생활 수급기간 방침 전면보류 적용**

3. **신청방법**
   - 가.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발급(읍면동 주민센터)
   - 나. 예비군 대대본부(MI208-2)로 방문하여 증명서 및 보류원서 작성 제출
   - 다. 대대장 확인 및 승인 후 보류 적용
   - 라. 보류 적용 기간 : 보류신청서 제출부터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해제까지
   - ※ 자세한 사항은 예비군 홈페이지 '보류·해소' 참조

4. **유의사항**
   - 가. 가족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되며, 예비군 본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여야 함.
   - 나. 수급자 증명서를 예비군 본인의 이름으로 발부 받아야 함.
   - 다. 보류절차에 의거 본인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, 사유 해제 시에도 신고할 책임이 있음.
     ※ 보류사유가 해소되었을 때는 해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대본부에 신고하여 하며, 위반시 예비군법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.
   - 라. 기타 궁금한 사항은 예비군 대대본부로 문의 바랍니다.

중원대학교 예비군 대대장